

최신 판례 예규

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

서면원천-3100, 2021.07.21

질 의

- 질의인은 '20.11.11.13. 집합투자증권(이하: 펀드) 2 종을 환매하여 10,597천원(세전)의 수익 발생
※ 환매가액: 40,300천원, 취득가액: 29,702천원
- '21. 4월 증권사로부터 펀드 환매로 인하여 과세표준기준가격인 17,682천원의 배당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는 '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'를 통보 받음

질의내용

- 펀드 환매로 인한 배당소득이 발생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금액이 실거래가격인지 과세표준기준가격인지 여부

회 신

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.

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, 직업, 자산,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

서면국제세원-3451, 2021.07.20

질 의

- 신청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스위스에 거주하면서 유럽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으며, 2020년 '스위스에 계속하여 10년간 거주'의 요건을 충족하여 영주권 신청자격 획득 및 신청절차를 준비 중임

- 신청인은 국내주식 및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, 지난 10년간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적이 없음

•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0년 스위스로 함께 출국하였으나, 2017년 부친의 병간호를 위해 자녀와 함께 국내에 입국하여 부친의 집에서 함께 거주

- 배우자는 국내에 상가건물 및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, 시간제 강사로 근무 하며 생활하고, 스위스에는 자녀와 함께 연간 2~3개월 정도씩 방문하고 있음

질의요지

- 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

회 신

거주자·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, 직업,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,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.

Marketing Tax consulting

기업상속 적용 법인의 정규직근로자 계산시, 기업법인의 100% 해외 자회사에 파견되고 현지 업무만 하는 직원은 제외함

기업법인이 100%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, 해당 직원은 기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,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

서면법령재산-2053, 2021.09.30

질 의

- '20년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경영하던 가업(A법인, 덕트 제조업)을 상속받았으며,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예정임
- A법인은 '19년 해외현지법인(B법인)을 설립함(A법인 출자금 100%)
- A법인은 B법인 설립 직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던 A법인 직원 갑을 B법인에 파견함
- 근로자 갑은 가업과 관련 없는 B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 근로자 갑의 급여 및 4대보험은 A법인이 부담하고 있음

질의내용

-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가업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§18⑥(1)라목 및 마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

회신

귀 서면질의의 경우,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(이하 "가업법인"이라 함)이 100%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가업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, 해당 직원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제6항제1호 라목1)에 따른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, 가업법인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같은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2)에 따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.

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

사전법령재산-355, 2021.09.17

질의

- 2020.3.17. 종교용지를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증여 받음
- 증여인과 수증인은 모두 조계종 산하 사찰이며, 증여일 현재 종교 시설로 사용 중임

질의내용

-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용지를 출연 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

회신

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용지를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(재산세과-852, 2010.11.17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재산세과-852, 2010.11.17.>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"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"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,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,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